[별표 4-2]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(단가계약)<개정 2002.10.14.>

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(단가계약)

제1조(단가계약)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납품, 보증금, 지체상금 등에 대하여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의 관련조항에 불구하고 아래에 규정된 바에 의한다.

①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구매자가 계약조건 범위 내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납품요청서에 의거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수량, 납품기한, 납품장소, 분할납품 가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납품요청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② 계약상대자가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 (2002. 10. 14 개정)

③ 계약상대자는 매회별 납품요청 최대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당초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계약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.

④ 지체상금은 매 납품요청서 건별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 규정에 따른다

⑤ 납품요청서는 계약서에 규정된 품목별 납품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소요발생시기에 구매자가 발급한다.

⑥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납품요청받은 물품에 대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에도 납품할 의무를 진다.

⑦ 구매자와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다음 년도 단가계약체결시 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⑧ 단가계약품목의 실발주물량은 구매자의 소요판단 물량에 의하며, 구매자의 사업계획 변경 및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는 추정계약물량에 비해 증감될 수 있다.

⑨ 구매자의 별도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하는 재고를 보유하여야 한다.

⑩ 구매자는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 발주전이라도 계약상대자의 재고품에 대한 품질검사 및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, 합격품에 대하여는 발주후 품질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.